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상표심사기준

◇ 개정 이유

비전형상표의 기능성심사 강화, 건물 내·외관(영업장소)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를 위한 비전형상표 심사기준 정비 및 심사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특허청 퇴직자의 퇴직전 출원, 퇴직후 2년 내 출원 및 상표전문기관 재직자의 상표출원은 3인 협의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
- 나.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사용의사 확인대상으로 함
- 다. 저명한 타인의 승낙사항 심사 절차 보완
- 라.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심사에 관한 사항 정비
- 마. 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상표권에 의해 무기한 보호받지 않도록 비전형상표 특성에 대한 기능성 심사 절차 강화
- 바. 입체, 위치, 색채상표 등의 식별력 및 기능성 유무 판단기준을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편하는 한편, 건물 내·외관(영업장소) 및 위치상표로 출원된 색채를 비전형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